

국방부령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방부 (인권담당관)
연 월 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6584호, 2019. 11. 26. 공포, 2020. 5. 27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현행 제4조의 각 군 기본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의무가 상위법인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반영됨에 따라 중복 규정을 삭제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○○○○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방부령 제 호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장 병영생활</u> <u>제4조(기본권 교육계획) ① 각 군</u> <u>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</u> <u>제38조제1항에 따라 「대한민</u> <u>국헌법」과 법에서 보장하고 있</u> <u>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</u> <u>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</u> <u>한 교육(이하 “기본권교육”이라</u> <u>한다)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</u> <u>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</u> <u>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</u> <u>의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국</u> <u>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	<u>제4장 병영생활</u> <u><삭 제></u>